

대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

- 금년 첫 도입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
‘법을 몰라서 위반’하는 사례 적극 예방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대기업집단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5월 17일(수)과 18일(목)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. 금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매 반기별로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, 금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에 대한 첫 공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범위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.

[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개요]

- ▶ (일시·장소) 2023. 5. 17.(수), 5. 18.(목) 10:00~12:00
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(서울 중구 소재)
- ▶ (참석대상)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임직원

5.17.(수) 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, 48개)	5.18.(목) (상출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, 34개)
○ 10:05~10:45 하도급거래, 원·수급사업자 개념 등 하도급법 일반	
○ 11:00~11:40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	
○ 11:40~12:00 질의응답	

- ▶ (방법) 온·오프라인 교육 병행 실시(실시간 유튜브 송출)

개정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하도급법’)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, 지급하는 기간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 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. 특히 금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1~6월 기간동안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므로 대상 사업자들의 첫 공시의무가 준비되어야 할 시점이다.

설명회는 ①하도급거래 일반과 ②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소개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,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. 우선 첫번째 세션은 공시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,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, 수급사업자의 범위 등 하도급법 일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및 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과 사례를 소개한다.

두번째 세션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지급금액·비중 등 공시해야 하는 내용, 공시빈도·시기, 공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된다. 이와 더불어 자주하는 질문, 공시실무와 관련한 유의사항 등도 소개함으로써 실제 공시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진다.

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년도 처음 도입되어 놓치기 쉬운 하도급거래 공시의무에 대한 기업들 스스로의 법 준수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‘법을 몰라서 위반’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하여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기업집단의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.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되고 공시정보가 수급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, 온라인 교육, 맞춤형 상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.

<붙임> 1.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주요내용
2. 공시사항

담당 부서	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보름 (044-200-4945)
		담당자	사무관	윤은빈 (044-200-4950)
			사무관	이 호 (044-200-4953)
			조사관	이호진 (044-200-4955)
			조사관	조은원 (044-200-4956)

- (도입배경)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원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(2022. 1. 11. 개정, 2023. 1. 12. 시행)
 -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 하도급대금 결제정보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공유하여 하도급 전단계에서의 거래조건 개선 유도
- (주요내용) 해당 반기에 “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”는 ①지급수단별 지급금액, ②지급기간별 지급금액, ③분쟁조정기구 관련한 사항을 공시
 - ① (지급수단별 지급금액) 현금(수표),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되는 지급금액·비중 및 현금결제비율*·현금성결제비율**
 - * 현금·수표·만기1일이하의 어음·대체결제수단·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 지급비율
 - ** 현금·수표·만기60일이하의 어음·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 지급비율
 - ② (지급기간별 지급금액) 지급기간*에 따라 구분된 지급금액과 그 비중
 - * 10일 이내, 10일~15일 이하, 15일~30일 이하, 30일~60일 이하, 60일 초과
 - ③ (분쟁조정기구)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및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, 분쟁조정 절차·방법
- (공시 대상 거래) 직전 반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지급된 하도급대금 관련 거래, 단 법 시행일(23.1.12.)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
- (공시 빈도 및 시기) 공시는 매 반기마다 하되,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45일 이내 공시해야 함
- (공시 방법) 전자공시시스템(금융감독원 DART 시스템)을 이용하여 공시양식(전자문서) 제출

붙임 2

공시사항 (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참조)

1. (제1호) 지급수단별 지급금액

[지급금액 단위(백만원), 비중(소수점 둘째자리)]

	현금 및 수표	상생결제				어음대체결제수단				어음			기 타	계
		만기 10일 이하	10일 초과 60일 이하	60일 초과	소 계	만기 1일 이하	1일 초과 60일 이하	60일 초과	소 계	어음 (만기 60일 이하)	어음 (만기 60일 초과)	소 계		
지급 금액														
비중	①	②	③	④	⑤	⑥	⑦	⑧	⑨	⑩	⑪	⑫	⑬	⑭
현금결제비율										⑮				
현금성결제비율										⑯				

$$\text{※ ⑮(현금결제비율)} = \text{①} + \text{②} + \text{⑥}$$

$$\text{⑯(현금성결제비율)} = \text{①} + \text{②} + \text{③} + \text{⑥} + \text{⑦}$$

2. (제2호) 지급기간별 지급금액

[지급금액 단위(백만원), 비중(소수점 둘째자리)]

	10일 이내	10일 초과 15일 이하	15일 초과 30일 이하	30일 초과 60일 이하	60일 초과
지급금액					
비중					

3. (제3호)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

	내용
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	O/X
담당부서 및 연락처	
분쟁조정 신청 절차.방법	
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	
비고	